

서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관의 서훈제도를 중심으로 -

김 정 연 (경운대학교 박사과정)

I. 서 론

서훈(敍勳)이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에 대하여 칭찬하고 권장하여 등급에 따라 훈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상은 잘 한 일을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적 증거이며, 국가 및 민간기관 어디 서나 업적이 많은 사람에게 상을 주어 격려하고 칭찬하게 된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유형적 증거물을 수여하고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서 이를 정부포상이라고 한다. 징계가 조직 구성원의 그릇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인사 절차라면, 포상은 칭찬하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의 역동성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은 개인이 영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는 명예의 표시이며, 국민에게 귀감이 됨은 물론, 자긍심과 영예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므로 수훈자에게 품격 있게 수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특수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소방·교정·출입국공무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경찰과 소방, 교정·출입국 공무원은 상훈법 제14조에 의거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이 수여 대상이며, 동법 제15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하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보국훈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보국훈장을 수상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영예를 국가가 보장하나, 근정훈장 수상자는 국가 유공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평생을 성실히 복무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관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훈종(勳種)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경찰관의 사기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성실한 복무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봉사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국가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관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여 명예심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서훈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서훈제도의 의의

서훈의 본질적 의의는 명예에 있다.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이름·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라고 하며,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이라고 정의하며, 신망과 경의, 영광과 명성도 포함된다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심이란 세상이 널리 인정하는 좋은 평판이나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 또는 그것을 중시하는 마음을 말하며,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인간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정치적 생활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스토아학파에서는 명예를 건강·富와 더불어 지고선(至高善)¹⁾으로 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리고 근세에는 시민생활의 발달과 함께 명예를 인격존엄에 관한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

서훈제도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통합을,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자아존중과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 부여 수단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6, 8)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상훈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에게 수여한다. 서훈(敍勳)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훈장은 사회적 공적에 대한 인정의 표시이며, 국가 권위의 상징으로서 훈장이 명예로운 이유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수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훈제도는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여 사기를 증진 시키고, 직무수행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병채, 2006, 7) 또한 개인의 프로필에는 학력, 경력과 함께 포상수상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사기는 병력보다 3배나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하에게 나누어줄 충분한 훈장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전 세계를 정복해 보이겠다.”라고 장담하였듯이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양기옥, 1982, 5)

따라서 훈장은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금속조각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의미, 즉 높은 명예성이 부여 될 때 어떤 사회적 보상보다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훈제도의 존재이유로 통치행위를 들 수 있는 바, 통치행위란 통치자의 정치권력의 수단으로서 정치적 산물이다. 영국에서 1215년 대헌장이 제정되고 1628년 권리청원으로 일련의 인권이 보장되면서, 과거 군주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수단, 즉 상(賞)과 벌(罰)중, 罰은 국민의 저항으로 군주의 고유의 것이 아

1) 지고선(至高善)이란 인간 행위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도덕적 이상 가운데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년 의회와 법원에 의해 견제 받는 제한된 수단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상훈에 대한 군주의 권력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통치행위라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전의 수여를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서훈제도가 형벌 제도와 달리 통치행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훈이 개인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권리의 탈환 요구가 적었기 때문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6, 6)

2. 서훈제도의 기본원칙

서훈제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권위의 원칙으로 국민적 신뢰와 지지뿐만 아니라 그 기반위에 있는 정부에 의해 그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성의 원칙으로 포상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가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셋째, 희소성의 원칙으로 훈장의 남발을 막음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넷째, 보상의 원칙으로 수상자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따르면 명예심과 자긍심이 제고될 것이다

1) 권위의 원칙

권위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남들에게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신뢰할 만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또는 뛰어난 지식, 기술,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말한다. 1802년 나폴레옹이 만들어서 오늘날 까지 프랑스 훈장의 최고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레종 도뇌르(La Legion d'Honneur)²⁾ 훈장은 그 붉은 리본을 달고 전차를 타면 황급히 좌석을 양보해 줄 정도로 그 권위는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훈장이나 표창이라는 것이 영광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수상자의 명예에 대한 찬사라는 신뢰와 정부의 포상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종이나 장식품일 뿐이다.

포상의 가치는 공식적이고 영속적인 명예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수상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권의 교체에 무관하게 그 명예가 유지되어야 한다. 포상은 일정기간 정권을 담당한 유한한 정부가 주는 포상이 아니라 정통성을 갖는 국가가 주는 포상이어야 하고,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이 주는 훈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장은 수여권자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의식을 갖추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권위가 부여될 때 포상의 영예성은 확보된다 할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 2006, 8)

2) 프랑스 정부의 국가 최고훈장 '레종 도뇌르'(La Legion d'Honneur) '영광의 군단'이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 최고 훈장이다. 1802년, 집정관으로 있던 세기의 영웅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이 기존의 쌍루이 훈장을 수정하여 만들었다. 레종 도뇌르의 모토는 명예와 조국이다. 대부분의 훈장들과는 달리 특별한 공적에 대한 표창의 성격보다는 명예로운 삶을 산 인물에게 수여되는 성격이 짙다고 한다. (자료 참조 : 위키백과)

2) 공정성의 원칙

공정성이란 민주사회에서 어떤 일의 가치, 선악, 우열, 시비 등을 판단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정의의 기초임과 동시에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 요소이다.

J. S. Adams에 의하면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의사결정 결과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였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절차적 정의란 의사결정에 사용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을 의미한다.³⁾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영예성을 부여받기도 어렵다. 공적이 미약하거나 자격이 부족한 자가 훈장을 받게 되는 경우 훈장이 국가 사회를 통합 시키고 국민의 사기를 양양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논공행상으로 인해 조직과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할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 2006, 9)

심사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공적평가, 정치성의 배제, 적절한 심의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 기구 및 운영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심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사위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덕망있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심사위원은 사전공개 또는 사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희소의 원칙

희소가치가 있다는 것은 ‘드물기에 인정받는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훈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한 때는 훈장이 고양이 목걸이로까지 전락한 일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비틀즈에게 훈장이라면 O. B. E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같은 훈장의 소유자들이 사퇴 소동과 반납론이 일어나 파문이 인적도 있다.⁴⁾

단순히 일정 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훈장이 수여되거나, 특정단체의 회원에게 매년마다 해당 기념일에 일정 규모의 포상이 관례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포상은 의미없는 포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희소성 없는 포상으로 혜택까지 받는 다면 상훈 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며, 상식적인 사회 윤리가 훼손될 것이다.

포상의 객관성을 상실한 무분별한 수여는 국가포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정권이 바뀌고 시대정신이 달라져도 영예에 흠결이 가지 않도록 엄선하는 것이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의 올바른 정신일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6, 10)

3) J. S.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의 핵심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보상을 비교하여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된다는 것을 말하며, 조직에서 보상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작업상에서 공정하게 대우 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O.B.E(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의 약어)는 주로 민간인에게 수여하며, 여성에게 수여한 최초의 영국훈장을 의미한다.: <http://www.honours.gov.uk/>

4) 보상의 원칙

보상의 심리학적 의미는 ‘행위를 촉진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는 칭찬이나 물질’을 말한다. 인류역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상과 벌이라는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포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동기부여와 욕구충족, 허영심과 명예심을 자극하여 충성심과 복종을 이끈 보상제도는 어떤 사회적 보상 체계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자발적 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중 하나이다. 보상체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특히 형벌과 같이 피치자(被治者)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하여 그들의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명예심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지식계층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매우 유효한 것이다.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발전에 공헌한 표시로 훈장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물질적 혜택을 받았다면 그의 만족감은 더욱 클 것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동기 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훈장을 받은 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되, 그 전제 조건으로 서훈자 선정시 엄정한 기준과 절차가 따라야 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06, 11)

우리나라의 훈장 수훈자에 대한 혜택은 헌법 제10조 제3항에 보면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훈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없다. 단,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가가 능동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헌법학자의 견해는 있다.⁵⁾

우리나라는 무공훈장, 보국훈장(33년 이상 복무한 자의 경우) 수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며, 무공영예수당,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감면 및 무료 이용, 취업 보호, 교육 보호, 대부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과 사후에 국립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부합장으로 안장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서훈의 기능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명예심, 허영심이 있다. 이러한 인간 심리에 호소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적극적 동의를 얻어 내어 자발적으로 크게는 국가와, 작게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봉사하게 하는 순응의 확보는 국가 또는 조직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극찬, 2004, 143-144)

금전적 보상 같은 경제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명예와 허영심에 호소하는 훈장, 표창과 같은 사회적 가치 부여는 매우 효과적인 국가의 권위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훈장과 표창은 적은 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인간은 이성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정서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

5) 김중양, 2004, 헌법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헌법상 수상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은 곤란하나 국가에서 능동적 혜택 부여는 가능하다고 봄.

에 국가가 국민의 협조를 기대하려면 동조반응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의 상징조작을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이나 물리적·폭력적 강제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상훈은 국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의 통치행위 경로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사회 질서 유지 및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정부가 영예를 수여한다는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적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훈제도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조직에 기여라는 금지와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조직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인정과 존재의 인정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 국민통합 기능

상훈제도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국민 통합기능을 들 수 있으며, 상징 조작(symbol manipulation)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징조작이란 노래, 제복, 포스터, 슬로건 등의 정치적 상징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동일한 자극을 줌으로써, 그 사고나 행동에 동일한 반응을 기대해서 행해지는 심리조작을 말하며, 이러한 조작이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면 물리적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서도 국민들 사이에 이해 대립이나, 분쟁을 완화시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정치적 상징으로서는 훈장을 비롯하여 문장(로마제국의 독수리 문장 등) 국기, 당기, 국가, 당가, 제복, 건축물, 동상, 포스터, 초상화, 의식, 제관식, 열병식, 대중시위, 왕관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은 권력과 권위의 도구로도 될 수 있으며, 혁명과 반란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권력 상징조작의 방식으로 포상식의 장엄한 거행, 각종 기념일(국경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적인 건조물의 건립, 특정 음악의 장려와 금지,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의장의 제작(깃발, 장식물, 제복, 동상, 우표 등), 일화와 역사의 미화, 대중적 시위 등이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위에서 운용되는 영예성있는 상훈제도는 사람의 마음을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이끌어 국민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6, 12)

2)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제고 기능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얻게 되는데 조직구성원들의 동기형성에는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이다. 조직이 보상을 제공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크게 보면 결국 조직에 참여와 실적이라는 두 종류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를 통하여 직무만족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높여 생산성

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상의 종류에는 보수, 승진, 포상, 특별휴가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 구성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상수단은 대체로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승진은 직급의 상승과 그에 수반되는 보수의 상승 및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훈제도가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승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조직 관리에 있어서 포상은 성취감과 안정감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직무만족을 주고 결국에는 승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있어 포상은 구성원 개개인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만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6, 13)

Ⅲ. 정부 포상제도와 경찰관의 서훈

1. 정부 포상제도

우리나라의 근대적 훈장제도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던 구한말 광무 4년(서기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를 제정하여 7종의 훈장을 운영하던 것이 시초이며,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권위와 영예가 퇴색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건국공로 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현행 훈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훈장령이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12월 14일 현재의 상훈법을 제정하여 각 개별법령에 의거 운영되던 상훈제도를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개편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안전행정부, 2013).

매년 안전행정부에서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장, 「정부포상규정」에 의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모범 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 선발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포상 규모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 매체 등에 알리며, 각종 정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포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포상제, 포상종량제, 국민추천포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 대상과 포상시기,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 대상

장기간(25년 이상)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

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포상 대상자의 재직기간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57세 정년 적용시의 기준이므로, 2013년도부터는 60세의 정년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재직기간을 3년 이상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1〉 퇴직자 정부포상 대상

구 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	33년 이상	30년 이상 33년 미만	28년 이상 30년 미만	25년 이상 28년 미만

2) 포상 시기

일반직(경력직·특수 경력직, 별정직 우체국 직원 포함) 공무원의 경우 6월말과 12월말 년 2회 정년퇴직 시 수여하며,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자의 경우는 전년도 10월부터 3월중 퇴직자는 6월말에 수여하고, 4월부터 9월중 퇴직자는 12월말에 수여하고 있다.

교육 공무원은 학기가 시작되는 전달인 2월말과 8월말 년 2회 정년퇴직시 수여하며,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자의 경우는 전년도 6월부터 전년도 11월중 퇴직자는 2월말에 수여하고, 전년도 12월부터 5월중 퇴직자는 8월말에 수여하고 있다.

군인은 군인사법에 의거 생년월 다음 월 말일부로 전역하므로 전역하는 월 말일부로 수여하며, 명예퇴직자나 희망 전역자는 퇴직일 다음 월 말일에 수여하고 있다.

퇴직자의 정부포상은 적시성이 중요하므로 퇴직 당일 행사시 수여하는 것이 명예심과 자긍심, 조직 구성원들에게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희망 전역)자도 퇴직 당일 수여하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 포상추천은 대상자 누락 없이 정확히 파악하여 퇴직당일 수여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 후에 수여함은 행정의 불신, 당사자의 불편과 불만, 포상에 대한 가치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표 2〉 정부포상 시기

구 분	포상시기	
	정년퇴직	기타퇴직(명예, 의원면직 등)
일반직 공무원 (경력직·특수경력직, 별정 우체국직원포함)	퇴직일 (6월말, 12월말)	6월말(전년 10월~3월중 퇴직) 12월말(4월~9월중 퇴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포함)	퇴직일 (2월말, 8월말)	2월말(전년 6월~전년 11월중퇴직) 8월말(전년 12월~5월중 퇴직)
군인·군무원	퇴직일 (매월 말일)	퇴직일 다음 월 말일

3) 포상 종류

우리나라의 훈장은 직능별로 훈종(勳種)을 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이 있으며 단일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 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각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으나, 훈종 및 세분화된 등급은 전반적으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통폐합을 전제로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추천제한

정부포상 추천 제한 대상은 ①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이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와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다만,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하며, 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④ 퇴직 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⑥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훈장은 평생 공직에 성실히 복무한 평생 성실봉사상과 상훈의 영예성 유지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직 기간 중 어떠한 종류의 징계별과 형사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사면,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포상의 권위와 공정성과 희소성의 원칙을 준수함은 물론 재직 중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훈격 결정

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한다.

〈표 3〉 근정훈장 수여 기준

훈종 \ 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일반·정무·별정·기능·고용직 등	장관(급) 이상	차관(급)	1~3급 고위공무원	4~5급	6급이하 (기능직·고용직 별정우체국 직원 포함)	직급 (계급)
연구·지도직 법관·검사·외무공무원	-	차관급 상당직위	1~3급 상당직위	4~5급 상당직위	6급이하 상당직위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재직년수

자료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2013년도 정부포상 업무 지침(2013. 2. 5)

그러나 직급(계급)과 재직연수로 구분되어 있는 수여기준을 행정의 일관성과 간소화, 하위 직급자의 사기 증진을 위해 재직연수로 단일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장은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대통령 표창은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자, 국무총리 표창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훈장과 포장은 국무회의 심의 후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안전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결정된다.

2. 경찰관의 서훈

경찰관 서훈은 경찰관의 책임감과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평가·인정하여 적당한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서훈제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어떤 공적을 올렸을 때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강화시키고, 타인에게는 모방 자극을 주어 동일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배철호 외, 2004, 287)

정부 훈·포장 체계 등 포상제도 중 특히 경찰관 서훈제도에 관한 연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훈은 형벌이나 징계와 같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감성적인 인식과 근정훈장을 수훈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영예심과 관심부족으로 보국훈장은 군인에게만 해당하고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이 제도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 포상 기준

정부포상 기준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하고 창의적·혁신적인 자세로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천 제한 사항으로는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제외되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령)에 의거 사면·말소 된 경우에는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2013)

2) 포상 대상

경찰관·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를 대상으로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이 수여되며, 훈격별 수여 기준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은 장관급 이상, 2등급 황조근정훈장은 차관급 및 치안총감(소방총감), 3등급 홍조근정훈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준감)과 1~3급 고위 공무원, 4등급 녹조 근정훈장은 총경, 경정(소방정, 소방령) 및 4~5급 공무원, 5등급 옥조 근정훈장은 경감이하(소방경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이 있으며, 1등급인 통일장은 대장, 2등급 국선장은 중장, 3등급 천수장은 소장, 준장과 1급 군무원, 4등급 삼일장은 영관급과 2~4급 군무원, 5등급 광복장은 위관, 준사관, 부사관과 5급이하 군무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⁶⁾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표 4〉 근정훈장(경찰관·소방관)·보국훈장(군인·군무원) 수여 대상

구분	훈 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근정 훈장 (勤政 勳章)	훈 종	청조 (靑條, Blue Stripes)	황조(黃條, Yellow Stripes)	홍조(紅條, Red Stripes)	녹조(綠條, Green Stripes)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경찰관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하
	소방관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이하
보국 훈장 (保國 勳章)	훈 종	통일장 (統一章, Tongil Medal)	국선장 (國仙章, Gukseon Medal)	천수장 (天授章, Cheonsu Medal)	삼일장 (三一章, Samil Medal)	광복장 (光復章, Gwangbok Medal)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 이하
	군무원			1급	2 ~4급	5급이하

자료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2013년도 정부포상 업무 지침(2013. 2.)

3) 포상 시기

(1) 재직 경찰관

정부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 공무원 포상과 모범 공무원 선발에 우선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의 날 행사시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 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6)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태극(太極, Taegeuk), 2등급 : 을지(乙支, Eulji), 3등급 : 충무(忠武, Chungmu), 4등급 : 화랑(花郎, Hwarang), 5등급 : 인헌(仁憲, Inheon)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2) 퇴직 경찰관

정부포상대상은 평생 봉사상과 성실 근속상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5년 이상 장기간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公私)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포상 시기는 정년퇴직일 또는 명예, 의원 퇴직일(6월말, 12월말)에 수여하고 있으며 추천 제한 사항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사면 또는 기록말소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에서 결격사유(추천제한 사항) 없는 자를 포상심의 절차를 거쳐 훈격을 결정한다.

포장은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대통령 표창은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은 25년 이상 28년 미만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포상 시기는 대체로 국군의 날 행사시와 수시 포상, 퇴직자 정부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년퇴직(33년 이상 복무자) 군인의 경우 퇴직하는 월말 퇴직 시에 수여하며,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6월말과 12월말 퇴직 시에 수여한다.

3) 기타

경찰관의 사명감을 북돋우는 포상 성격의 경찰관 기장과, 충(忠), 신(信), 용(勇), 인(仁), 의(義)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발, 격려하는 최고 권위의 사회공로상인 청룡봉사상은 경찰관의 사기양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 경찰관 기장

경찰관 기장이란 경찰공무원 기장수여 규칙에 의하면 ‘경찰지휘관과 경찰관으로서 장기적으로 근속한 자에 대하여 수여’ 하는 기장을 말하며, 경찰관 기장은 경찰공무원 기장령(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경찰관이 치안역군으로서의 사명감을 북돋우고, 사기를 양양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써 경찰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경찰의 날(10월 21일)에 수여한다.⁷⁾

〈표 5〉 경찰관기장의 종류

기 장		수여 대상
경찰 지휘관장		경정이상의 경찰기관장
경찰 근속 기장	성 실 장	10년 이상 근속한 자
	봉 사 장	20년 이상 근속한 자
	충 성 장	30년 이상 근속한 자
	평 생 장	40년 이상 근속한 자

7) 경찰공무원 기장수여 규칙

(2) 청룡 봉사상

청룡 봉사상은 조선일보사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매년 5월에 추천을 받아 7월에 시상하고 있다. 청룡 봉사상은 1967년 조선일보 창간 47주년을 맞아 제정되었으며, 한 해 동안 국가보위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 밝은 사회건설을 위해 헌신해온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충(忠), 신(信), 용(勇), 인(仁), 의(義)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발, 격려하는 최고 권위의 사회공로상이다.

청룡봉사상의 시상 부문은 국토방위와 경비, 안보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보위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수여하는 충(忠)상, 헌신적 봉사와 적극적 대민 업무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에게 수여하는 신(信)상,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방법 및 수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찰관에게 수여하는 용(勇)상이 있으며, 상장과 트로피, 상금 각 1,000만원과 1계급 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⁸⁾

〈표 6〉 청룡 봉사상 종류 및 대상

부 문	대 상
忠 賞	국토방위 및 경비, 국가보안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국가보위에 공헌한 경찰관
信 賞	헌신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대민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찰관
勇 賞	왕성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방법 및 수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중대 범인검거에 큰 공이 있는 경찰관

3. 국가유공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7) 제1조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예우의 기본 이념(2조)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8) <http://hero.chosun.com> 및 조선일보 2013. 5. 4일자: 민간인 부문은 인류에 구현을 위해 희생하거나 사회봉사에 정성을 다해 칭송과 존경을 받는 분들에게 수여하는 인(仁)상,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타인의 인명 구조에 앞장선 분들에게 수여하는 의(義)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적용대상(4조)으로는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戰歿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④ 전상군경(戰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및 퇴직한 사람으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⑤ 순직군경(殉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⑥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⑦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⑧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⑨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⑩ 참전유공자 ⑪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⑫ 순직·공상 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성실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봉사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관’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상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IV. 발전방안

경찰의 임무는 경찰법(2011.8) 제3조(경찰의 임무)에 의하면 경찰(Police)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치안유지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뜻과 제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군인의 임무와 유사하다고 해석하여도 될 것이다.

이는 경찰의 직무가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찰관의 사기문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의 사기가 증진될 때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봉사정신은 최대한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위국헌신의 주요 기능을 보면 광복이후 호국경찰로서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6·25 전쟁, 공비토벌소탕 작전, 대간첩 작전 등에 참전

하여 군인과 동일한 국토방위 및 국가보안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보위에 공헌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전적지와 충혼탑이 있으며, 국립현충원과 호국원내에 경찰묘역이 있다.

군인복무규율⁹⁾에 의하면 국군의 이념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의 기본 정신¹⁰⁾에 따라 국군이 존재하는 의의와 추구하는 가치를 명시한 국군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국군의 사명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이념을 토대로 한 국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신분은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이 있는데 경찰관과 소방관은 상훈법 제14조¹¹⁾에 의거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수여 대상이고,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상훈법 제15조¹²⁾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하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어, 대다수의 정년퇴직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상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또는 상훈법 14조에는 근정훈장 수여 대상으로 군인, 군무원은 비대상자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상훈법 15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군인과 같이 보국훈장을 수상하여 국가유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현재 무공훈장과 보국훈장 수훈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 혜택으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및 농토 구입 시 대부지원, 사망 시 국립 현충원 부부합장, 가사 및 간병지원, 고궁 · 국립공원 이용지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¹³⁾을 부여 받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력에 따라 대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 부족, 시간적인 제약, 연구자의 경험과 능력의 한계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9)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20282호, 2007. 9. 20) 제4조(강령) 1항(국군의 이념), 2항(국군의 사명)

10)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 :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 사립학교 교원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12) 상훈법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13) <http://www.mpva.go.kr/>

그러나 앞으로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헌신 봉사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관에게 현행 근정훈장을 보국훈장으로 변경, 수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통해 명예심과 자긍심·보람을 갖게 하며, 사기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장려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를 두면서 차후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4.
-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2004.
- 배철호, 박동균 공저 『경찰인사관리론』 남두도서, 2004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2006. 9)
- 양기옥, 군 상훈 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정병채, 우리나라 서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방종식, 육군상훈 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경식, 상훈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정무설, 정부상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배윤호,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https://www.sanghun.go.kr/pt/> (행정안전부), 2013년도 정부포상 업무 지침(2013. 2)
- <http://www.mpva.go.kr/> (국가보훈처)
- <http://hero.chosun.com> 및 조선일보 2013. 5. 4일자
- 상훈법 (법률 제11393호, 2012.3.21)
- 경찰법 (법률 제11032호, 2011. 8. 4)
-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20282호, 2007. 9. 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2012. 7. 1)